

신분당선 전철(강남~정자)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

2016년 7월 27일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신분당선주식회사
SHINBUNDANG RAILROAD CO., LTD

전 문

1. 국토교통부(구 건설교통부)와 신분당선주식회사는 2005년 3월 18일자로 '신분당선 전철(강남~정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이하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
2. 위 실시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의 시공 등을 진행하던 중 양재시민의 숲(매현)역 위치변경 등 실시협약의 '총사업비의 변경이 예상되는 잔여쟁점' 사항과 관련한 사업의 변경, 출자자변경, 사업기간 연장 등으로 실시협약을 변경할 필요가 발생하였다.
3. 이에 아래 당사자는 실시협약의 변경 필요성에 따라 실시협약 일부를 변경하기 위하여 2016년 7월 27일 본 변경실시협약(이하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한다.
 - (1) 대한민국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본 사업의 주무관청으로서의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정부")
 - (2) 대한민국법에 따라 설립되고 대한민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06번길에 주된 사무소를 둔 신분당선 주식회사 ("사업시행자")

제1조 (정의)



실시협약 제2조(정의) ① 중 129항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129. "자금제조달"이라 함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상의 자금제조달을 말한다.

제2조 (총 사업비에 관한 사항)

실시협약 제15조(총사업비)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구분	내용
당초	총사업비는 부록1(총사업비)과 같이 2002년 5월 1일 불변가격 기준으로 금 11,690억원이며 총사업비에서 제62조(건설보조금)에 의한 건설보조금 금 5,611억원을 제외한 부록1(총사업비)의 금 6,079억원을 총 민간사업비로 한다.
변경	총사업비는 부록1(총사업비)과 같이 2002년 5월 1일 불변가격 기준으로 금 <u>12,223억원</u> 이며, 총사업비에서 제62조(건설보조금)에 의한 건설보조금 금 5,611억원을 제외한 부록1(총사업비)의 금 <u>6,612억원</u> 을 총 민간사업비로 한다.

제3조 (공사기간에 관한 사항)

실시협약 제28조(공사기간) ①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구분	내용
당초	① 본 사업시설의 공사기간은 공사착공일로부터 60개월로 한다. 다만, 본 협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변경	① 본 사업시설의 공사기간은 공사착공일로부터 <u>77개월</u> 로 한다. 다만, 본 협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운영비용에 관한 사항)

실시협약 제48조(운영비용) ①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구분	내용
당초	① 본 협약 체결 당시 운영비용은 2002년 5월 1일 불변가격 기준으로 16,700억원(법인세제외금액)원으로서 민간투자법령 및 본 협약으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조정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하며, 연도별 운영비용 내역은 부록7(운영비용)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변경	① <u>본 협약</u> 체결 당시 운영비용은 2002년 5월 1일 불변가격 기준으로 <u>16,729억원</u> (법인세제외금액)원으로서 민간투자법령 및 본 협약으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조정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하며, 연도별 운영비용 내역은 부록7(운영비용)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제5조 (사업수익률에 관한 사항)

실시협약 제56조(사업수익률)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구분	내용
당초	본 사업의 사업수익률은 실질사업수익률로서 세후 8.00%, 세전 9.08% (2002년 5월 1일 불변가격 기준)로 하고 본 협약 종료시점까지 변경되지 않는다.
변경	본 사업의 사업수익률은 실질사업수익률로서 <u>세후 7.48%, 세전 8.33%</u> (2002년 5월 1일 불변가격 기준)로 하고 본 협약 종료시점까지 변경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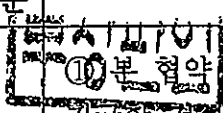
제6조 (예상운영수입에 관한 사항)

실시협약 제60조(예상운영수입)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구분	내용
당초	사업시행자 지정 시 적용한 본 사업의 예상운영수입은 2002년 5월 1일 불변가격 기준으로 금 41,513억원(예상운영수입 40,202억원, 부속사업수입 1,311억원)이다.
변경	사업시행자 지정 시 적용한 본 사업의 예상운영수입은 2002년 5월 1일 불변가격 기준으로 금 <u>41,525억원</u> (예상운영수입 <u>40,214억원</u> , 부속사업수입 1,311억원)이다.

제7조 (건설보조금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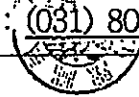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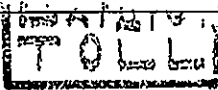
실시협약 제62조(건설보조금) ①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구분	내용
당초	 ① 본 협약 체결 당시 주무관청이 총사업비 중 일부로서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할 건설보조금은 2002년 5월 1일 불변가격 기준으로 총사업비 대비 48%에 해당하는 금 5,611억원으로 하며, 건설보조금 지급일정은 부록3 (건설보조금 지급일정)와 같다.
변경	① 본 협약 체결 당시 주무관청이 총사업비 중 일부로서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할 건설보조금은 2002년 5월 1일 불변가격 기준으로 총사업비 대비 <u>45.9%</u> 에 해당하는 금 5,611억원으로 하며, 건설보조금 지급일정은 부록3 (건설보조금 지급일정)와 같다.

제8조 (통지에 관한 사항)

실시협약 제95조(통지) ①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당 초>	<변 경>
<p>① 본 협약 상의 통지나 문서의 송달은 다음의 주소 또는 협약당사자가 지정하는 주소로 하여야 한다.</p> <p>1. 정부에 대한 통지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수신 : 건설교통부장관 전화 : (02) 504-9055 팩스 : (02) 504-9056</p> <p>2. 사업시행자에 대한 통지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05-7 수신 : 신분당선주식회사 대표이사 전화 : (02) 510-3776 팩스 : (02) 510-3322</p>	<p>① 본 협약 상의 통지나 문서의 송달은 다음의 주소 또는 협약당사자가 지정하는 주소로 하여야 한다.</p> <p>1. 정부에 대한 통지 주소 : <u>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u> 수신 : <u>국토교통부장관</u> 전화 : <u>1599-0001</u> 팩스 : <u>(044) 860-9500</u></p> <p>2. 사업시행자에 대한 통지 주소 : <u>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u> <u>판교로 606번길</u> 수신 : 신분당선주식회사 대표이사 전화 : <u>(031) 8018-7500</u> 팩스 : <u>(031) 8018-7589</u></p>



제9조 (부록에 관한 사항)

실시협약의 부록 1, 부록 2, 부록 3, 부록 4, 부록 5, 부록 6, 부록 7, 부록 8, 부록 12, 부록 13은 이 변경실시협약에 첨부된 부록과 같이 변경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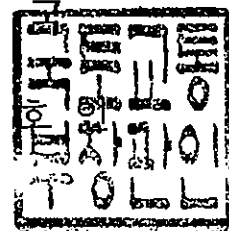
제10조 (변경실시협약의 효력)

- ① 본 변경협약은 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 ② 변경협약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시협약을 적용한다.
- ③ 변경부록은 변경협약의 일부로서 변경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이 변경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당사자는 변경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자 기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6. 7. 27.

대한민
국토교통부장관 강



신분당선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재연

